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3
----------	------

발의연월일 : 2020. 7. 13.

발 의 자 : 이상민 · 장철민 · 이원욱
황운하 · 조승래 · 김진표
박영순 · 신현영 · 박성준
기동민 · 김종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미래세대의 혁명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경제와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세계 주요 국가와 선도 기업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담은 법률을 정비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지원이 정부 추진주체나 개별 산업별로 다핵화되어 추진됨에 따라 기존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임.

이에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산업에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역기능에 대비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과 준비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지속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삶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산업에서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역기능에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함(안 제3조).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인공지능 정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수준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등

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정부는 인공지능 융합을 촉진하고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등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기반의 집적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지속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구현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 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기술이나 그 기술로 만들어진 기반기술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3. “인공지능 산업”이란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인공지능 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의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인공지능사업자 등은 인공지능 산업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인공지능사업자 등은 인공지능의 개발·제조·생산·유통·활용 등 모든 단계에서 차별과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일자리 감소 등 역기능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인공지능정책심의위원회) ①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과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정책심의회위원회의 위원은 인공지능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공지능의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사업의 창업지원 등 인공지능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필요한 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기반 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10. 인공지능산업에서의 인권보호 및 차별과 편향을 예방하기 위한 윤리강령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공지능 개발 및 기반기술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의 기술개발 및 기반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2. 기술 협력 및 이전
3. 기술 및 기반기술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4. 그 밖에 기술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및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및 취소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표준화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효율적인 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원활한 표준화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① 정부는 인공지능 융합을 촉진하고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및 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2. 인공지능 융합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 표준화 지원
3. 인공지능 융합에 관한 시범사업의 추진·시행
4. 그 밖에 인공지능 융합을 촉진하고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 지원

제12조(시범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창업의 활성화)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

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3.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연산 능력 등 인프라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인공지능 기술 기반 집적시설의 구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이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기반의 집적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제협력과 국외진출의 지원)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과 인공지능 기술의 국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3. 국가 간 인공지능 공동 연구·개발
4. 인공지능 관련 국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공조
6. 그 밖에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

요한 사업

제16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인공지능산업협회의 설립)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적인 생태계 조성 및 인공지능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현황 및 통계 관련 실태조사
2.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인공지능 기술 및 시장의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
4.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인공지능 산업에서의 인권보호 및 윤리강령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인공지능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